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5시 40분

목차

목차 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 3
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3

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

2017.07.04 10:40 조회수 156 등록자

민원사무명	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
민원내용	정액·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·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임.
관계법령	축산법 시행규칙
구비서류	-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(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) 1부(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) - 정액 · 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 · 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(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) -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) -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(휴업,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)
처리부서	농업정책과
협의부서	허가민원과
접수	
수수료	
처리기간	총5일
기타사항	
흐름도	
기타참고사항	

목록

이전글 사료제조업 승계 신고

다음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